한국기업지배구조원 (www.cgs.or.kr)	報 道 資 料 (Press Release)
보 도 일 자	2016. 4. 6. (수) 조간

201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Ⅰ.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은 2012년부터 주주총회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37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여 찬·반 권고를 담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

□ 의안분석 대상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90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47사임

Ⅱ. 의안분석 결과 주요 내용

1. 의안분석 개괄

□ 237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총 1,67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CGS는 이 중 **304건(18.15%)**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함(붙임 〈표 1〉 참조)

□ 대상 기업의 **과반(56.9%)**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함

2. 안건 유형별 주요 이슈

□ **(이익배당)** CGS는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에 대하여 **과소하거나 과다한 배당을 사유로 반대 권고함**

o (**이사회 승인**)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승인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한 회사는 40사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한 회사가 없어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존재함

□ **(정관변경)** CGS는 112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개사**의 변경 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를 발견하여 **반대 권고**함(붙임 〈표 2〉 참조)

o (**종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도입함에 있어 전환사유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거나,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를 명시한 8사에 대하여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권고함

o **(금지법 반영)**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정관에 반영하면서, 기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완화하여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반대 권고함

o **(주총 승인 사항 변경)** 이 밖에 이익배당,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등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을 합리적인 사유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바꾸려는 안에 대하여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반대 권고함

□ **(임원선임)** CGS는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44건(반대 권고율 25.71%)**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여 **반대 권고**함(붙임 〈표 3〉 참조)

o **(사추위 설치 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설치한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29.68%로, 사추위를 미설치 회사에 대한 반대 권고율 41.28%에 비해 11.6%p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10명 중 3명의 후보가 부적격 요소를 지니고 있어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o **(특수관계)**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다수(107건) 발견되며,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상당수(79건) 있어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됨

o **(장기연임)** 신규임기를 포함하여 20년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후보가 있는 등, 장기연임으로 인하여 경영지과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60건이 존재함

o **(낮은 출석률)** 특정 사업연도에 개최된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 단 1회도 참석한 기록이 없는 후보가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는 등, 충실한 이사회 활동이 가능할지 의심되는 39건이 존재함

□ **(임원보상)** CGS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건에 대하여 반대 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여타 **성과 연계성 등이 미흡**한 주식매수서택권 부여의 건, **공시가 미흡**한 임원퇴직급지급규정 개정의 건 16건에 반대 권고함(붙임 〈표 4〉 및 〈표 5〉 참조)

(붙임) 201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세부내용 1부, 끝.

담당부서	Proxy 팀
담당자	윤진수 팀장(02-3775-3711, js-yoon@cgs.or.kr) 이수원 연구원(02-3775-3781, swlee@cgs.or.kr)

(붙임) 201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세부내용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찬·반 투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고객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2016년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37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안분석 수행결과를 집계·정리하여 분석함

1. 의안분석 대상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은 고객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의안분석 대상 기업 237사를 선정함

□ 237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90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47사임

o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90사 중 KOSPI200 종목 편입사는 137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코스닥 프리미어 종목 편입사는 25사임

o 의안분석 대상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123사이며, 금융회사는 26사임

2. 의안 상정 현황 및 분석 총괄

□ CGS는, 올해 1분기 의안분석 대상 상장회사 237사가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총 1,675건 중 **304건(18.15%)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음

o 안건 유형별 반대권고율은 감사(위원) 선임(40.54%), 기타(43.24%),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으로 나타남

o 의안분석 대상 기업 중 56.9%에 해당하는 135사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제성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함

〈표 1〉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현황

구분	전체	재무제표·이익배당	정관변경	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감사보수한도	기타*2
				이사회				감사기구			계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계	감사위원	감사	계				
반대권고율(%)	18.15	3.69	17.69	6.64	5.00	33.52	20.14	40.52	40.74	40.54	25.71	4.20	2.60	43.24
반대권고수	304	9	23	20	2	117	139	94	11	105	244	10	2	16
상정안건수*1	1,675	244	130	301	40	349	690	232	27	259	949	238	77	37
대상기업수(반대권고기업수)	237 (135)	237 (9)	112 (22)	175 (14)	29 (2)	176 (89)	210 (96)	124 (67)	26 (11)	150 (78)	211 (109)	237 (10)	77 (2)	35 (15)

*1 후보 1인을 1개의 안건으로 계산하므로 회사의 안건 상정 방식과 다를 수 있음

*2 회사분할 및 영업양도의 건, 퇴직금지급규정 제·개정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등

[그림 1] 안건 유형별 반대권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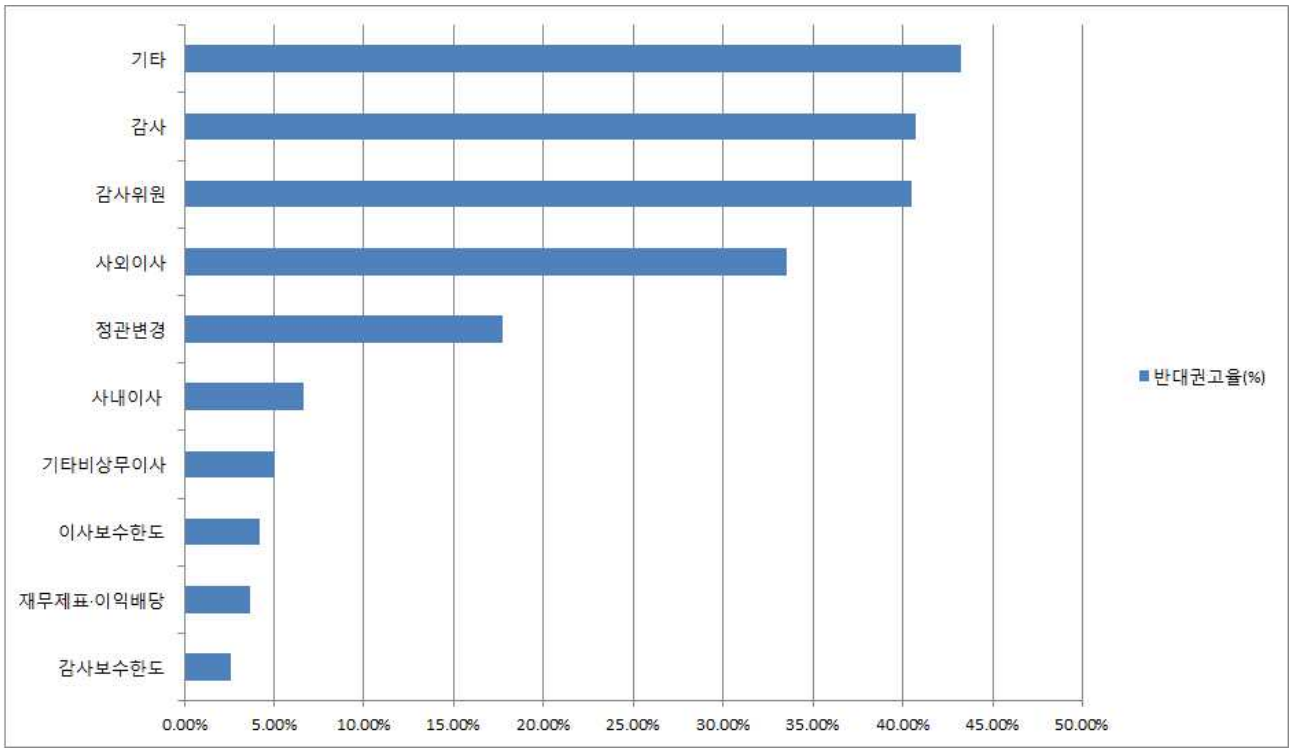

□ (주주제안) 237사 중 코스닥상장사 1사에 사내이사 2인 선임 안건이 주주제안으로 상정됨

o CGS는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투표를 권고하였음

3. 안건 유형별 의안분석 결과 : 세부 반대 현황과 주요 사례 소개

1) 재무제표·이익배당

□ CGS는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에 대하여 **과소하거나 과다한 배당을 사유로 반대 권고함**

o CGS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과소한 배당 7사, 과다한 배당 2사이며, 배당의 '과소' 혹은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된 요인은 회사의 순이익지표, 재무구조, 향후 투자계획 및 투자규모, 자본 및 이익잉여금 규모, 동종업계 배당성향 수준 등임

〔사례 1〕 과소한 배당 – H사의 경우

H사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2015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4.27% 임
- H사는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 규모가 연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이익지표도 증가 추세를 보임
- 반면, 최근 3년간(2015년 3분기) 매출액 대비 투자 금액은 0.52%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임
- 동종업계 경쟁사들의 평균 배당성향(18.96%)과 비교하여도 H사의 배당수준은 과소한 것으로 보임

〔사례 2〕 과도한 배당 – C사 및 O사의 경우

C사는 방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2015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에도 배당을 지급함
- C사는 최근 5년간 세 차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5 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189% 하락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 처리됨
- 이러한 상황에서 C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총액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3분의 1 수준이며, 물적분할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계획임
- C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42.86%이며 이 중 법인인 최대주주의 지분은 39.36%임

O사는 음식료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2015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205.21% 임
- O사의 2015 회계연도 배당성향이 전년 대비(606.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배당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익잉여금의 159.5% 수준에 달함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현 배당수준이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일 수 있음
- 동종업계 경쟁사들의 평균 배당성향(28.2%)과 비교하여도 O사의 배당수준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O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8.53%이며,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는 이번 배당 승인에 따라 약 98억원을 수령하게 됨

□ 한편, 분석대상 상장회사 237사 중 197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나머지 40**사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 안건을 승인**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하였음

o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승인한 회사 중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한 회사는 없어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존재함

2) 정관 변경 안건

□ CGS는 112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개사**의 변경 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를 발견하여 **반대 권고**함

o 우선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식을 도입함에 있어, i)그 전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에 위임하거나(7사), ii)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1사)한 정관 변경 안에 대하여 CGS는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권고함(〈표 2〉 참조)

o 이어 이익배당,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등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을 합리적인 사유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바꾸려는 안에 대하여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반대 권고함

o 서면투표제를 폐지하거나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려는 안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반대 권고함

o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정관에 반영하면서, 기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완화하여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반대 권고하였으며, 사외이사 수나 비율의 축소,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의 과도한 단축에 대하여 이사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 권고함

o 명의개서대리인 공고 의무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주식연계채권 발행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권 희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각각 반대 권고함

〈표 2〉 정관 변경 안건 반대권고 사유

대분류	세분류	해당 회사[*1]
정당한 M&A에 대한 부당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 우려	전환주식 전환 조건 발행시 이사회에 위임	7
	전환주식 전환 조건 중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명시	1
주주총회 승인 사항 이사회에 위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4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3
	기타 주주총회 결의 사항	1
소수주주 보호 수단 폐지	서면투표제 폐지	3
	집중투표제 배제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 초래 우려	사외이사 결격사유 완화	3
	사외이사 수와 비율의 축소	1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의 과도한 단축	1
주주권리 침해	명의개서대리인 공고 의무 삭제	2
	주식연계채권 발행한도의 과도한 확대	1

[*1] 반대사유 합계가 반대 건수를 초과하는 것은 동일 회사의 안건에 대해 복수의 반대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임

□ 한편,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112사 중 **7사**는 **상이한 성격의 정관 변경 안건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상정**하였으며, 이는 주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임

3) 임원 선임 안건

① 임원 선임 안건 총괄

□ 분석대상 237사 중 211사는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CGS는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그 중 **25.71%**에 해당하는 **244명 후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음

o 임원은 사내·사외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위원·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구성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경우는 6.45% 수준이나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후보에 대한 반대권고율은 각각 33.52%, 40.52%, 40.74%로 매우 높은 편임

□ CGS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후보 대부분은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과거 해당회사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 '장기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이며, '낮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등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임(<표 3> 참조)

o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회사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견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여러 이해관계나 장기연임 등으로 독립성에 의구심이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o 이 같은 독립성 문제는 감사위원이나 감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이행을 감사할 의무가 있는 감사기구의 구성원이 독립성을 결여할 경우 효과적인 감사를 이행하기 어려움

o 아울러,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출석률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반대권고 사유 중 '낮은 이사회·위원회 출석률'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빈도가 높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어 CGS는 과거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21명**과 **행정적·사법적 제재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 15명**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를 권고함

〈표 3〉 임원 구분별 반대 사유 현황

반대 사유		사내이사[*1]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계
특수관계 범주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2]	0	49	38	2	89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3]	0	6	5	1	12
	(계열사 포함)전직 임직원	0	3	1	2	6
소계		0	58	44	5	107
장기연임		0	33	23	4	60
낮은 출석률		0	24	14	1	39
회사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10	5	6	0	21
행정적·사법적 제재		12	2	1	0	15
과도한 겸임		0	4	5	2	11
과도한 비감사용역비		0	0	9	0	9
전문성 결여		0	1	1	0	2
계[*4]		22	127	103	12	264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포함
[*2] 이해관계는 거래관계 · 경쟁관계 · 협력관계 등을 포함
[*3] 최대주주 · 주요주주 · 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
[*4] 반대사유 합계가 반대 건수를 초과하는 것은 동일 안건에 대해 복수의 반대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임

□ 한편,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상정한 167사 중 **사추위를 설치한 회사는 94사**이며, 해당 회사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CGS의 **반대 권고율은 29.68%**임

o 이는 사추위를 설치하지 않은 73사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율 41.28%에 비해 11.6%p 낮은 수준이나 사추위가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10명 중 3명에서 여전히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고 있어 동 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임원선임 주요 반대 사유 – 특수관계 범주

□ CGS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중 의안분석 대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사유는 **여러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하여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해당 건은 전체 반대 사유의 **40.53%**를 차지함

o 특수관계 범주는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 등 비명시적 특수관계와 회사의 최대주주·주요주주·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회사·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이하, 전직 임직원) 등 명시적 특수관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을 사유로 CGS는 **89건의 임원 선임 안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회사·계열회사·최대주주와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특수관계인이 50건**으로 가장 많음

o 이어 회사·계열회사·최대주주와 여러 사업상 계약을 맺었거나 맺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상정된 경우는 17건이었으며, 그 중에는 회사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례도 발견됨

o 게다가 회사·계열회사·최대주주와 외부감사계약을 맺었거나 맺고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례도 10건이나 발견되어 독립적인 이사회 및 감사기구 구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함

□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86%**로 현저히 많다는 점과, 당해회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과반수**라는 점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구성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전직 임직원 등 **명시적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례는 18건**임

o 최대주주나 2대주주의 전·현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례(11건)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회사는 해당회사나 계열회사에서 상무에 종사한(대표이사, 경리팀장 등) 인물을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CGS는 이에 반대투표를 권고함

③ 임원선임 주요 반대 사유 – 장기연임

□ CGS의 가이드라인은 **장기연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총 60건**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반대투표를 권고**함

※ CGS 의결권 가이드라인 상 장기연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임기를 포함하여 7년 초과임(단, 금융업종은 5년)

o 신규임기를 포함한 최장 재임연수는 20년이었고, 반대투표를 권고한 후보의 평균 재임연수는 10년을 초과함

o 일부 회사는 다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상당기간 재임한 인물을 당해회사의 후보로 추천하여, CGS는 이에 계열회사의 재임기간을 합산하여 장기연임으로 간주함

④ 임원선임 주요 반대 사유 – 출석률 저조

□ CGS의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충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39건**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반대투표를 권고**함

o 특정 사업연도에 개최된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률이 50% 미만인 기록이 있는 후보가 추천된 경우가 39건 중 21건으로, 해당 후보가 이사회나 감사기구에서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음

o 이 중 특정 사업연도에 개최된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 1회도 참석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후보를 추천한 경우가 9건이나 발견되어 회사가 충실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4) 임원 보상 관련 안건

□ 분석대상 상장회사 237사는 238*건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였으며, CGS는 그 중 **4.20%에 해당하는 10건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음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각 회사당 1년에 한 차례,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보수한도를 분리 상정한 사례로 인해 기업 수에 비해 안건이 1건 많게 나타남

□ 반대투표 권고는 **과도한 이사보수한도(4사)·장기인센티브 지급 기준 이사회 위임(3사)·등기임원 외 임직원 포함 한도 제시(3사)**를 사유로 이루어짐(<표 4> 참조)

o '과도한 이사보수한도'는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기업의 경영 성과 지표 등을 고려하여 이사보수한도의 수준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다하게 상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반대 사유를 의미함

o 더하여 미등기임원 등 등기임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이사보수한도를 제시한 경우,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등기임원의 권한과 능력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책정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음

□ 감사보수의 경우, 77사가 각 1건씩 총 77건의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CGS는 그 중 2건에 대하여 반대를 권고**하였음

o 감사보수 한도에 대한 반대 권고는 2건 모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감사의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한도를 승인받는 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잔여 임기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그 보수 한도가 과도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함

〈표 4〉 임원보수한도 승인 안건의 반대권고 현황

구분	반대 사유	안건수	비고
이사보수한도	과도한 이사보수한도	4	
	장기인센티브 지급 기준 이사회 위임	3	
	등기임원 외 임직원 포함 한도 제시	3	
감사보수한도	과도한 감사보수한도	2	감사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에 따른 감사의 잔여임기 대비 보수한도가 과도함
계		12	

□ **(기타 임원보상 안건)** 올해 분석대상 중 28개사는 임원보상과 관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개정의 건’ 등을 29건 상정하였음

o CGS는 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11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1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은 4건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개정 안건 등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음

o 임원퇴직급지급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한 1개 회사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 안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등 주주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례도 발견됨

〈표 5〉 임원보상 관련 안건 상정 내역 및 반대권고 현황

구분	상정안건수	반대권고수	반대권고율	반대 사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2	11	91.6%	성과미연동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1	1	100.0%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개정의 건	16	4	25.0%	공시미비
계	29	16	55.2%	

5) 기타 안건

□ 앞서 소개한 안건 외 ‘회사분할 및 영업양도의 건(3건)’, ‘주식병합의 건(1건)’,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주주포괄위임의 건(1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개정의 건(1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방법 변경 승인의 건(1건),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KOSDAQ 조건부 상장폐지 결의의 건(1건)’이 상정되었으며, CGS는 해당 안건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찬성 권고함

이상.